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와 대전테크노파크는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드론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 및 사업화를 함께 수행할 참여기업을 모집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대전테크노파크원장

☐ 추진배경

-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법」에 근거한 규제 특례 제도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및 운영

-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된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을 유예·면제·간소화 할 수 있는 구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조성계획, 경제성, 주민안전 및 주변환경, 안전관리 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운영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 사업명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 대상 구역

- 기존 지정 4개 구역(서구·유성구·대덕구, 3대 하천 중심)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구역 변경·추가는 시와 협의

☐ 특례 내용

-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면제·간소화

1. 사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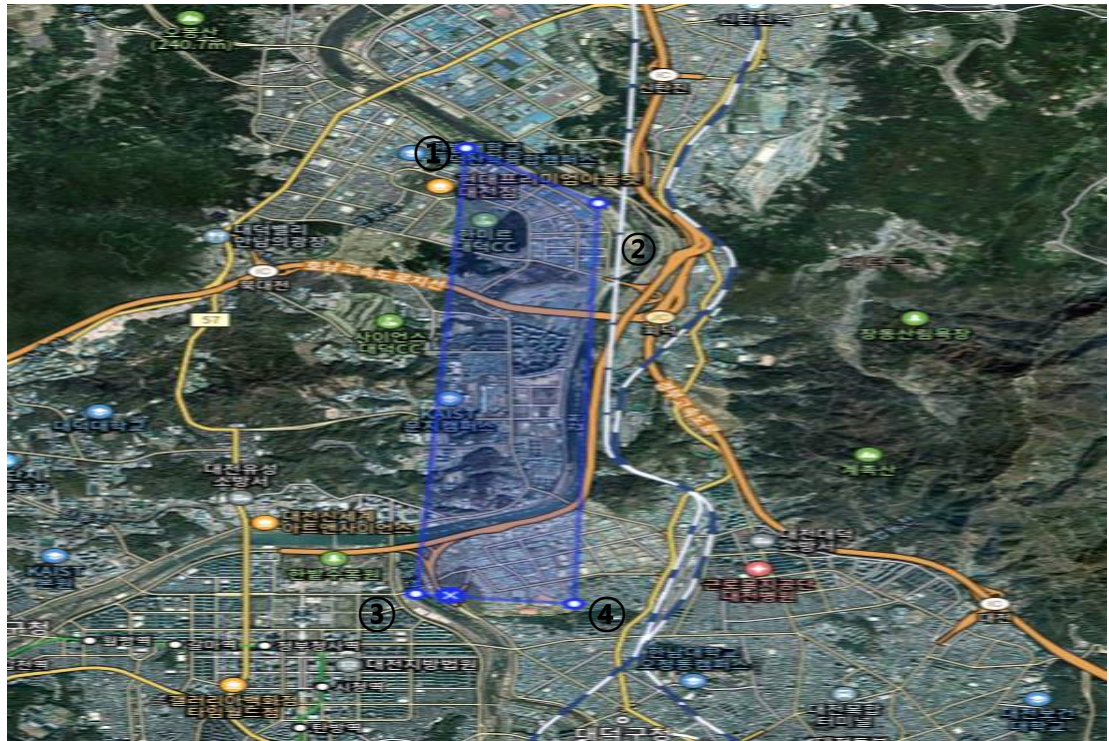
- 드론 서비스를 실증, 상용화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비행 사전규제 및 전파 관련 사전평가 등*을 유예 또는 면제·간소화 하는 드론 전용 규제특례 구역 운영 필요

2. 지정 현황

제1구역 (유성구 전민동 일원)

지정구역

(대전 유성구, 대덕구 일원, 관평동, 용산동, 탑립동, 전민동, 원촌동, 도룡동, 신일동, 대화동, 신대동)



좌표

136°25'40.66"N 127°24'10.58"E

236°25'14.59"N 127°24'46.44"E

336°21'53.67"N 127°23'52.40"E

436°21'47.21"N 127°24'40.74"E

면적

7.17km2

고도

AGL 100m 미만

구분

①특별감항증명 (항공안전법 제23조)

②무인항공기 비행허가 (항공안전법 제68조)

③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항공안전법 제124조)

④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⑤특별비행의 승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⑥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

해당 여부

비해당

비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제2구역 (대덕구 문평동 일원)

지정구역

(대전 대덕구, 유성구 일원)

구죽동, 금고동, 봉산동, 탑립동, 관평동, 용산동, 목상동, 문평동, 신일동)



좌표	1	36°27'06.90"N 127°23'05.70"E		
	2	36°27'10.30"N 127°24'39.20"E		
	3	36°26'20.25"N 127°23'15.59"E		
	4	36°25'14.59"N 127°24'46.44"E		
면적	5.54km2		고도	AGL 150m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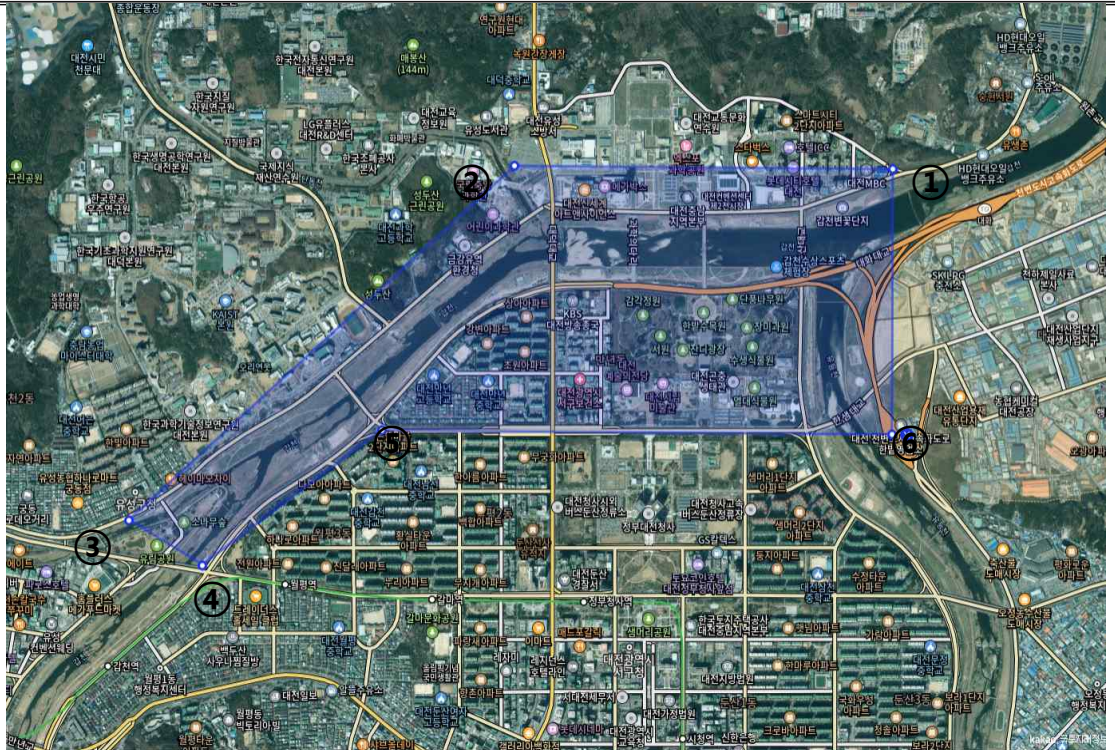
규제특례 신청사항	구분		해당 여부
	①	특별감항증명 (항공안전법 제23조)	비해당
	②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항공안전법 제68조)	비해당
	③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항공안전법 제124조)	해당
	④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해당
	⑤	특별비행의 승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해당
	⑥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	해당

제3구역 (서구 만년동 일원)

지정구역

(대전
서구, 유성구
일원)

만년동,
월평2동,
둔산2동,
도룡동,구성동,
어은동,봉명동)



좌표	1	36°22'32.94"N 127°23'55.53"E
	2	36°22'32.94"N 127°22'40.99"E
	3	36°21'44.49"N 127°21'21.81"E
	4	36°21'32.76"N 127°21'36.45"E
	5	36°21'53.67"N 127°22'10.51"E
	6	36°21'53.67"N 127°23'52.40"E

면적	3.56km2	고도	AGL 150m 미만
----	---------	----	-------------

규제특례 신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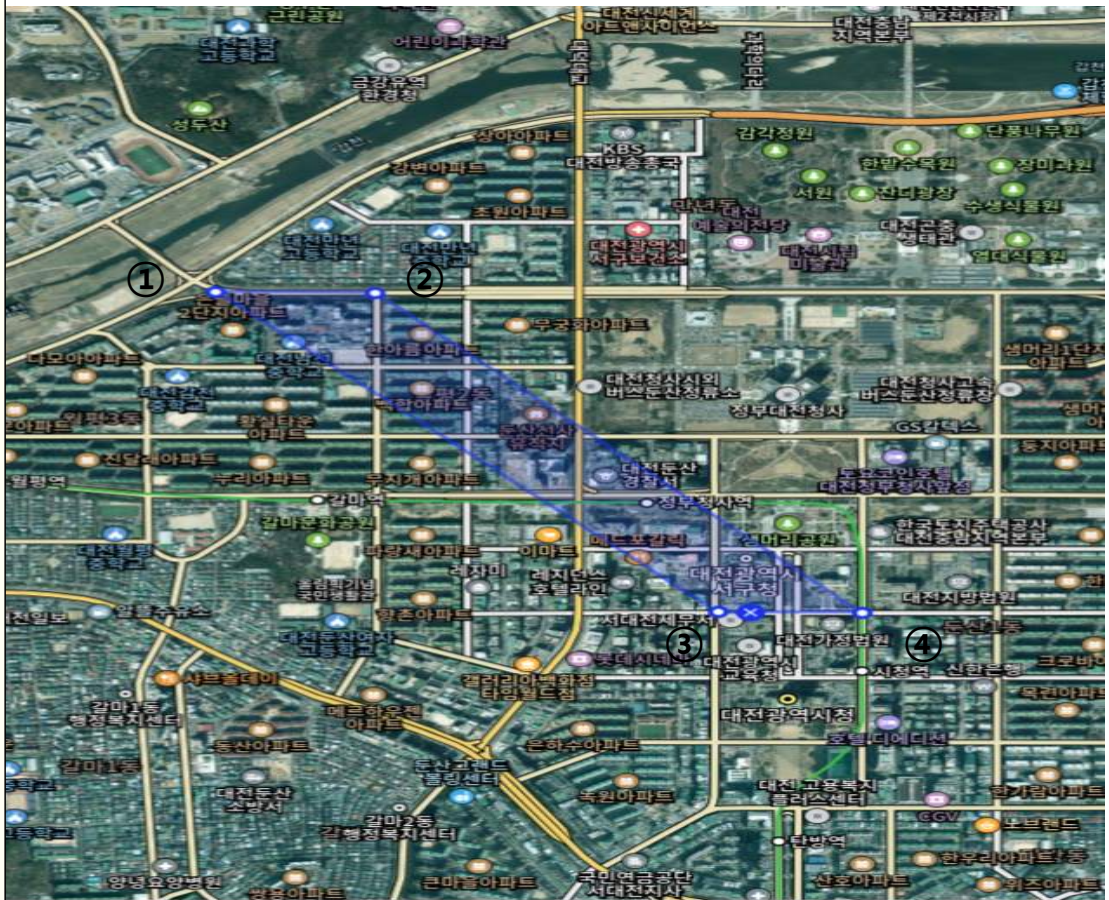
구분	해당 여부
① 특별감항증명 (항공안전법 제23조)	비해당
②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항공안전법 제68조)	비해당
③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항공안전법 제124조)	해당
④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해당
⑤ 특별비행의 승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해당
⑥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	해당

제4구역 (서구 둔산동 일원)

지정구역

(대전 서구
일원)

만년동,
월평2동,
둔산1동,
둔산2동)



좌표

1	36°21'53.12"N 127°22'14.98"E
2	36°21'53.12"N 127°22'27.79"E
3	36°21'13.32"N 127°22'59.52"E
4	36°21'13.32"N 127°23'11.68"E

면적

0.38km²

고도

AGL 150m 미만

규제특례 신청사항

구분

해당 여부

① 특별감항증명 (항공안전법 제23조)	비해당
②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항공안전법 제68조)	비해당
③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항공안전법 제124조)	해당
④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	해당
⑤ 특별비행의 승인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해당
⑥ 적합성평가 (전파법 제58조의2)	해당

3. 모집대상

대전광역시 소재 또는 대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사업화를 수행할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4. 사업수행

- 가. 「드론법」 제2조제1항의 드론 범주에 해당하는 기체로 실증
- 나.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른 기체 등록 신고 완료
- 다. 구체적 실증 시나리오·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월 단위 시로 제출
- 라. 시가 수립하는 안전관리 조치계획 준수
- 마.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외산 기체의 사용 자제

5. 접수 기간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2026. 9. 28.(월) ~ 2026. 10. 9.(금) 18:00까지
- 나. 접수방법: 대전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DIPS) 활용
(<https://www.dips.or.kr/>)
- 다. 문의처: 042-930-4413

6. 제출 서류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선정 취소

7. 선정 방법

- 가. 서류 검토 후 선정
- 나. 검토 기준: 실증 적정성, 실현 가능성, 안전관리 체계 등
- 다. 선정 규모: 제한 없음
- 라. 결과 통보: 개별 통보

붙임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참여 신청서 1부. 끝.